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0년 10월 현재 서술형 237건, 사례형 18건 등 총 255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01

Q |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주변에 지나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버스 이용 시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물품강매·호객행위, 쓰레기 등 투기 및 노상 방뇨 등 금지되는 행위 및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버스에서의 금지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 물품강요·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8호)
-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꽂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이나 버린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 노상방뇨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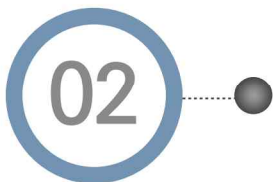


-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혐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 음주소란 등: 버스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영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 또한, 버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Q |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를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 등에서의 추행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 대중교통 성범죄

▶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 버스나 지하철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 위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함)한 자 또는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함)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 ▶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03

Q |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구입하였는데, 오토바이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란?**

- ▶ “오토바이”란 법률용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상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3조제18호 및 제19호).
-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3조제19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 ▶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 오토바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04

Q |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금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사고의 경우 이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공무원이 공무원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원상재해보상심의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 ▶ 일반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 불복절차

- ▶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며, 해당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 본문).
- ▶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 공단에 제기해야 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 및 제3항),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2항 및 제3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05

Q |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뺑소니, 무보험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

- ▶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5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 ▶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금액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을 입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

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 최고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06

Q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두어야 할 교통관련법규가 있을까요?

A | 자전거는 “차”이므로 모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통행방법, 보행자보호의무 및 음주운전 금지 등의 중요한 교통관련법규를 미리 잘 숙지해두고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전거의 통행방법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으로 구분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 ▶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 ▶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 ▶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 보행자 보호의무

- ▶ 자전거운전자는(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



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그 밖의 준수사항

-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 ▶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 ▶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